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이현숙 소유물건(2025타경104110)

의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감정평가서번호: 대동251017-0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동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 강 수

감정평가액	육억오천만원정 (₩650,000,000.-)					
의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 현 숙 (2025타경104110)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10.21	2025.10.20 ~ 2025.10.21	2025.10.2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이	구분건물	1개호 하 여	- 백	650,000,000
	합 계					₩65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I 기본적 사항의 확정

1.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63 외 소재 “한라타운아파트”				
주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2001-06-2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연면적	10,846.84㎡		
토지면적	2,159.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체층수	지하2층/지상15층	규 모	1개동 73세대		
대상물건 내 역	층 · 호수	면 적(㎡)		총 면적 (㎡)	대지권면적 (㎡)
		전유	공용		
	제4층 제404호	78.0386	71.5599	149.5985	28.46

2. 감정평가 개요

가.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난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제404호 부동산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나. 감정평가 근거

본건 부동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의 감정평가의 관계법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 및 이론에 근거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다.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해 당 사 항 없 음.

라.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본건의 실지조사 및 자료조사 기간은 2025년 10월 20일 ~ 10월 21일로 대상물건의 지역 및 개별적요인 등을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10월 21일임.

3. 그 밖의 사항

-본건 현장 조사시에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집합건축물대장의 건물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인근의 평가전례, 기타자료 등을 종합고려하여 인근 유사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내부상태 및 구조, 마감자재 등을 기준하였는 바, 실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II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으로서 ①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②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③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의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각 방식에는 ①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②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3방식으로 구분됨.

가.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원가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나.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다.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3.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가. 선정원칙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 3 방식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따르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이나 임료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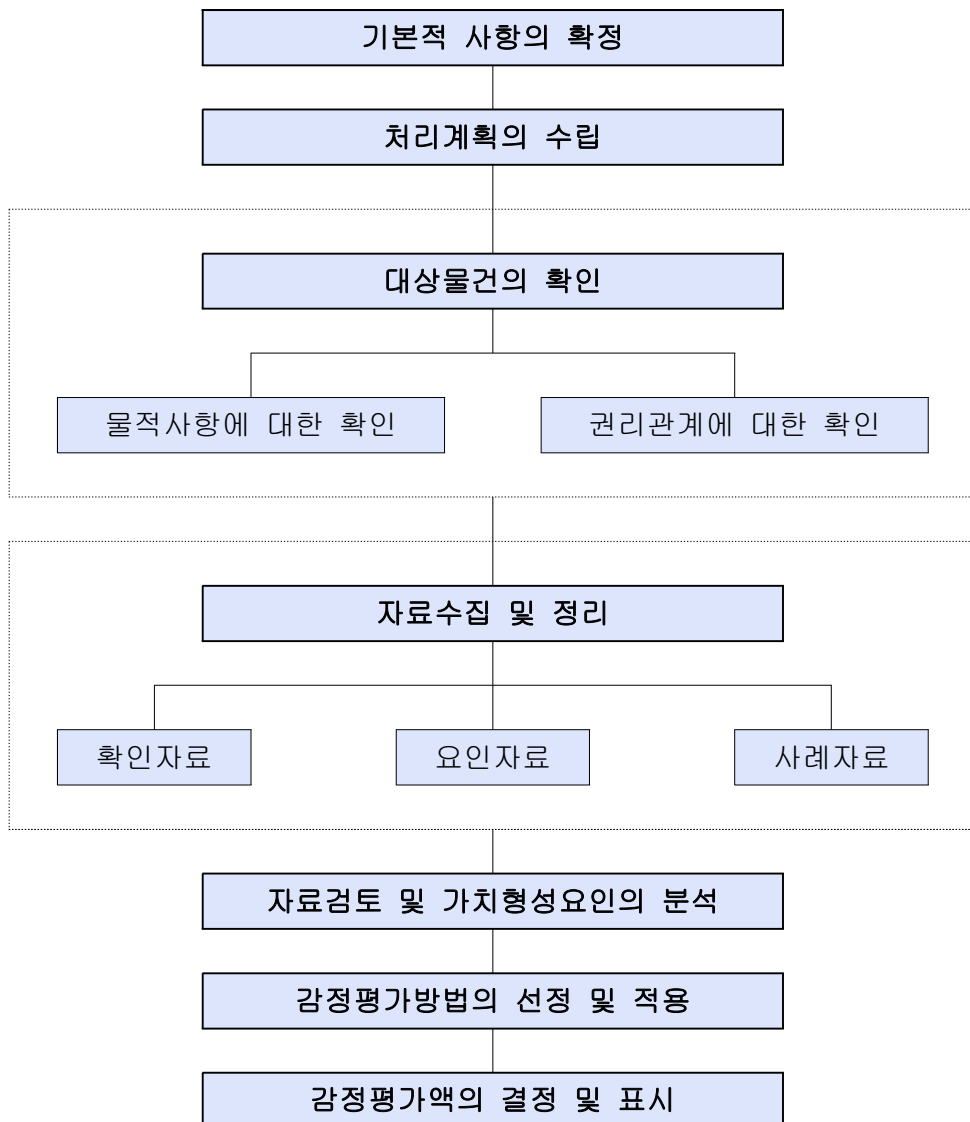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구분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검토하여 비준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분건물의 주된 평가방법 :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임.
---------	--

4. 감정평가의 절차

본건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III 대상물건의 개황

1. 입지조건

가.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난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나.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동측 인근 “간선도로(난우길)” 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측 약 1.2km 지점에 전철역(신대방역 : 지하철 2호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다. 위치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63 외 소재 “한라타운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5 타경 104110
부동산 임의경매

2. 대상물건 개요

가. 토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련 번호	지번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도로 교통	공시지가 (원/㎡)
1	763 외	35,241	대	2종일주	아파트	사다리 평 지	세각 (가)	5,019,000

나. 건 물

명 칭	위양지상 : “한라타운아파트”				
주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2001-06-2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연면적	10,846.84㎡		
대지면적	2,159.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체층수	지하2층/지상15층	규 모	1개동 73세대		
대상물건 내 역	층 · 호수	면 적(㎡)		총 면적 (㎡)	대지권면적 (㎡)
		전유	공용		
	제4층 제404호	78.0386	71.5599	149.5985	28.46

본건 소재
건물 현황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거래사례 등을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함.

거래사례비교법	$\text{사례가액}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times \text{면적} = \text{시산가액}$
---------	---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본건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중 본건과 비교성이 높으며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번호	지번/명칭	동/층/호수	면 적 (㎡)		용 도	거래가격(원)	거래시점
			전유	대지권		단가/전유	사용승인
#1	746-**- / 건영아파트	제나동 제1층 제***호	60.27	40.88	아파트	462,000,000	2025-03-12
						@7,670,000	1984-10-16
#2	7**- 외 / 한라타운 아파트	- 제11층 제***호	79.7905	29.11	아파트	600,000,000	2025-01-07
						@7,520,000	2001-06-29
#3	17**- / 초원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호	59.93	26.737	아파트	463,000,000	2025-04-22
						@7,730,000	1999-07-07

※ 자료출처: KAIS(부동산통합업무시스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5 타경 104110
부동산 임의경매

나. 평가사례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번호	지번/명칭	층/호수	전유면적 (원/㎡)	용도	평가 목적	평가가격(원) 단가/전유	기준시점
1	7** 외/ 한라타운 아파트	제8층 제***호	79.43	아파트	경매	634,000,000	2023-12-27
						@7,980,000	
2	17**/ 라이프아파트	제10층 제****호	84.38	아파트	공매	662,000,000	2025-03-21
						@7,850,000	
3	17**/ 라이프아파트	제10층 제****호	84.38	아파트	경매	665,000,000	2025-06-24
						@7,880,000	
4	17** / 신림동 두영아파트	제12층 제****호	84.87	아파트	경매	674,000,000	2024-03-31
						@7,940,000	

다. 거래사례의 선정

상기의 거래사례 중 동일단지 내에 소재하고 거래시점 및 가치형성요인상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비교 용이한 「거래사례 #2」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구함.

3. 사정보정

선택한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사료되어 사정보정은 아니함.

사정보정률	1.00
-------	------

4. 시점수정

시점수정치는 서울특별시 강남지역 서남권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2025.03=100.0)

가. 적용지수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서울특별시 강남지역 서남권 관악구)

기 호	사 례		본 건		시점수정치 (B/A)	비고
	매매시점	지수 (A)	기준시점	지수 (B)		
거래사례 #2	2025.01.07	100.0	2025.10.21	102.0	1.02000	-

나. 기준시점 : 2025.10.21.

※통계작성방법의 변경으로 2021.7월 이후에는 직전 월의 지수를 적용함.

- 거래시점(2025.01.07.) : 2024년 12월 지수를 적용함.

- 기준시점(2025.10.21.) : 2025년 09월 지수를 적용함.

[월별 서울특별시 강남지역 서남권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5.03 = 10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99.9	99.9	100.0	100.1	100.3	100.6	101.2	101.6	102.0	-	-	-
2024년	98.5	98.2	98.0	98.0	98.2	98.5	99.0	99.5	99.7	99.8	99.9	100.0

5.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개 요

집합건축물의 가격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 혹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하는 일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형성요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과 대상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구분으로서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은 ①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외부적요인(입지요인)과 ②구분소유권이 속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내부적요인(건물요인)으로 구성되며 ③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격형성요인으로서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개별적요인(호별요인)과 ④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으로 구별되는바 이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반영함.

가치형성요인	조건 및 항목	비 고
외부적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입지요인 (토지요인)
내부적요인	당해 전체건물과 관련하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물요인
개별적요인	당해 구분건물에 관련하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래의 동향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5 타경 104110
부동산 임의경매

나.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 거래사례 #2 기준

가치형성요인		격차율(대상/사례)	
요 인	세항목	비교치	비 고
외부적 요인	가로조건	1.00	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동일 단지내로서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및 가로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대등함.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내부적 요인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1.00	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동일 단지내로서,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건물의 규모 등 내부적 요인에서 대등함.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정도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등		
개별적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향별 효용	1.08	대상물건(4층, 78.0386㎡)은 거래사례(1층, 79.7905㎡) 대비 층별효용 등 개별적요인에서 우세함.
	내부 평면방식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유사함
누 계	비준율 = 외부적요인 × 내부적요인 × 개별적요인 × 기타요인	1.080	1.00 × 1.00 × 1.08 × 1.00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상기 평가과정을 거쳐 기준시점의 시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산 식		사례가액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면적 = 시산가액					
대상	사례가액(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전유면적(㎡)	시산가액(원)	결정가액(원)
가	600,000,000	1.00	1.02000	1.080	78.0386/ 79.7905	646,447,798	650,000,000

※ 전유면적기준 산정단가(원/㎡)

대상	결정가액(원)	전유면적(㎡)	산정단가(원/㎡)	비고
가	650,000,000	78.0386	@8,329,211	-

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 평가과정을 종합 검토하여 본건의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대상 물건	지번	종 별	층/호수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 유	대지권		
가	763 외	아파트	제4층 제404호	78.0386	28.46	650,000,000	-

2. 결정의견

-본건 부동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의 감정평가의 관계법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 및 이론에 근거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의 소유권 대지권은 일체성을 지니며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별도 평가는 곤란하나 본 평가에서는 귀원 요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부동산연구원 등에서 정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참고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9(신림동)	763, 763-81 위양지상 한라타운 아파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				
				1층	527.3301			
				2층	520.3067			
				3층	613.6475			
				4층, 5층 각	612.4374			
				6층 ~ 10층 각	527.0596			
				11층 ~ 13층 각	417.2800			
				14층, 15층 각	367.8460			
				지하1층	1,727.1561			
				지하2층	1,593.6861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35.3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9			
				(내)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제4층 제404호	78.0386	78.0386	65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 71.5599㎡ 포함)
2	동 소	763-81	대	1,2. 소유권	28.46			
				----- 대지권	2,159.2	28.46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390,000,000 260,000,000	
합 계							₩65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난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동측 인근 "간선도로(난우길)"변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측 약 1.2km 지점에 전철역(신대방역 : 지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건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샷시 이중창호 마감.

(4) 이용상태

아파트-(후면 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에 의한 개별 난방시설 등의 설비 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인접 도로 대비 등고 ·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동측으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간선도로(난우길)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다세대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토지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다세대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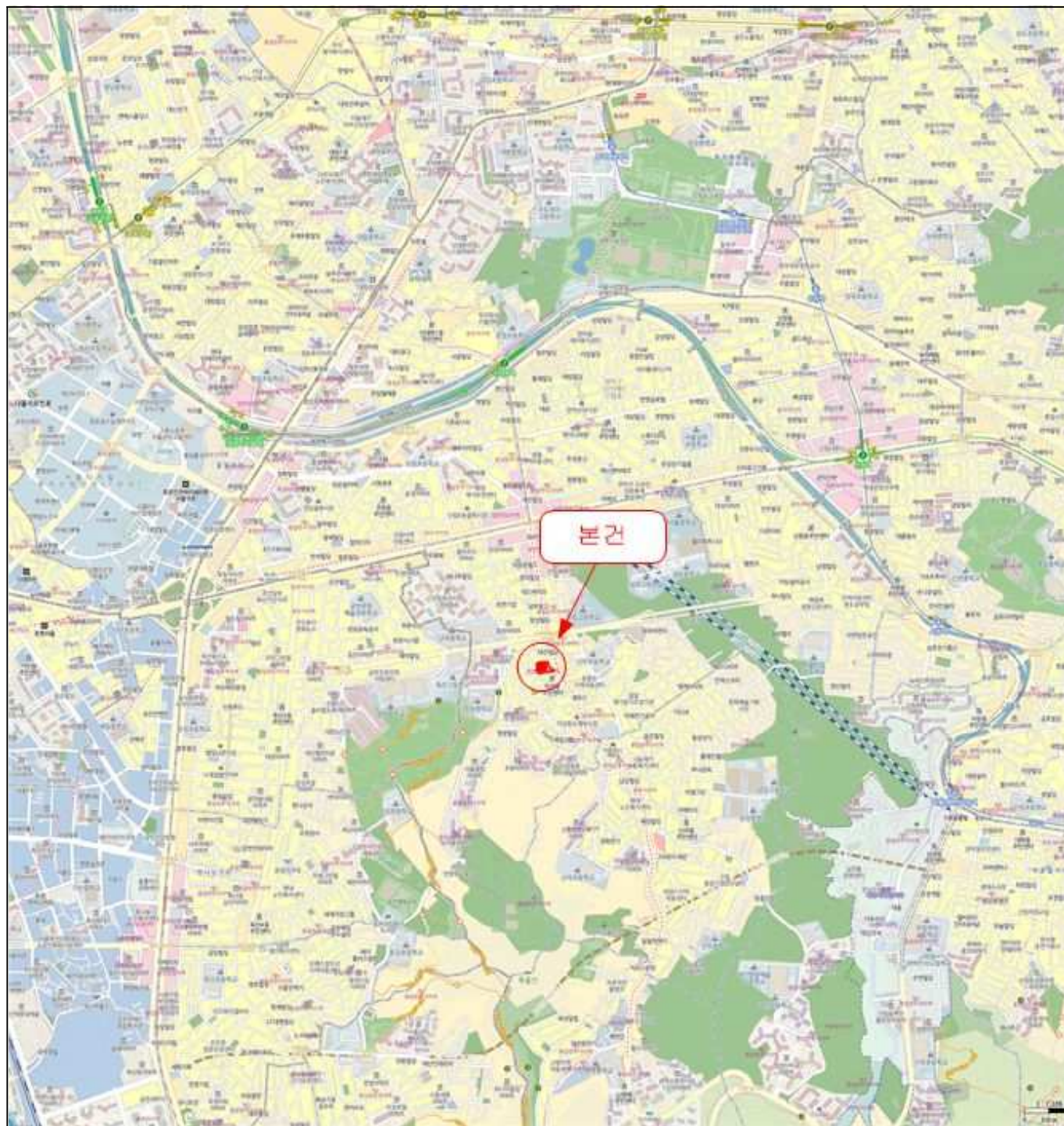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63 외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제404호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63 외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제404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63 외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제404호



본건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제404호

<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호별배치도 >



< 한라타운아파트 제4층 제404호 내부구조도 >

사 진 용 지



본건 현관 및 복도 이용현황



본건 1층 공동출입구 현황

사 진 용 지



본건 주위전경(남동측에서 촬영)



본건 주위전경